

의안번호	2212214
의 퇴 인	김성원의원
회 답 일	2025.11.26.
추계번호	25D442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을 2035년까지 9년 연장할 경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5년까지 191억 7,400만원(연평균 21억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연장	2,786	2,285	1,917	2,005	2,017	—
구분	2032	2033	2034	2035	합계	연평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연장	2,057	1,996	2,035	2,076	19,174	2,1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기존 평택시등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동두천시 및 의정부시 등 15년 이상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의무규정
2	안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체육시설·공원·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를 평택시뿐만 아니라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의무규정
3	안 제34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대상에 평택시뿐만 아니라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의무규정
4	안 제40조(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방자치단체의 법안적용 준용) 신설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4조부터 제31조까지의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을 준용하여 지원하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9년 연장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조(목적)	×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의 일부 주한미군기지 반환일정이 미정이며, 현재 발전종합계획의 사업타당성 및 민자유치의 어려움,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 등 향후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
2	안 제32조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	
3	안 제34조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	
4	안 제40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방자치단체의 법안적용 준용) 신설	×	
5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유효기간)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법 적용을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기존 평택시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동두천시 및 의정부시 등 15년 이상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안 제32조),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안 제34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방자치단체의 법안 적용 준용(안 제40조)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표 2]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현황

구 분		면적
서울특별시	수송부	약 8만㎡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	약 245만㎡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약 1,145만㎡
	캠프 호비	약 304만㎡
	캠프 모빌	약 15만㎡
평택시	알파 탄약고	약 244만㎡
	CPX 잔여지	약 27만㎡

자료: 국방부

- 의정부시의 경우, 8개 주한미군기지 중 스탠리 기지를 제외한 7개 기지가 반환완료되었으며, 시어즈 기지 1개는 개발이 완료되었고, 라파디아, 홀링워터, 에세이온 등 3개 기지는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 카일, 잭슨, 레드클라우드, 스탠리기지 등 4개 구역은 도시개발사업, 복합터미널, 공원 등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추정 총사업비 2조 4,804억원의 재원마련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임

[표 3] 의정부시 주한미군기지 반환구역 발전종합계획 및 추진현황

기지명	반환일	반환면적 (㎡)	활용면적 (㎡)	총사업비 (억원)	주요내용	사업기간
합계		5,850,501	1,739,015	37,356	-	
라파디아	2007.04.13.	136,774	123,790	4,661 (국비 663, 지방비 1,119, 민자 등 2,878)	공원, 도로, 공공청사, 주차장, 공공주택 등	2009~2027
홀링워터	2007.05.31.	53,223	28,384	696 (국비 321, 지방비 349, 민자 등 25)	근린공원, 도로, 환승센터 및 주차장	2009~2027
에세이온	2007.05.31.	307,502	217,050	6,226 (국비 106, 지방비 173, 민자 등 5,947)	근린공원, 도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연구시설	2009~2027
카일	2007.05.31.	145,164	132,108	2,560(추정)	도시개발사업	2009~2035
시어즈	2007.05.31.	129,177	130,163	969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완료
잭슨	2020.12.11.	1,642,027	84,401	1,634(추정)	도시개발사업	2024~2031
레드클라우드	2022.02.25.	836,000	11,612	10,930(추정)	도시개발사업	2022~2035

기지명	반환일	반환면적 (㎡)	활용면적 (㎡)	총사업비 (억원)	주요내용	사업기간
스탠리	미반환	2,600,634	795,995	9,680(추정) (국비 295, 지방비 166, 민자 등 9,219)	도시개발사업	2020~2035
			28,042		복합터미널, 도로	
			187,470		공원	

주: 총사업비 중 카일, 잭슨, 레드클라우드, 스탠리 기지의 사업비는 추정치로 변동 가능성이 있음
자료: 의정부시 제출자료

- 동두천시의 경우, 6개 주한미군기지 중 캠프님블과 짐볼스훈련장 등 2개 기지의 반환이 완료되었으며, 4개 기지는 일부반환 또는 미반환 상태임
- 생산용지, 연구단지, 주거시설, 공원, 도로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나 총사업비 2조 5,059억원 중 국비 406억원, 지방비 159억원, 민자 882억원 등 일부 재원만 확보되었음

[표 4] 동두천시 주한미군기지 반환구역 발전종합계획 및 추진현황

기지명	반환일	반환면적 (km ²)	활용면적 (km ²)	총사업비 (억원)	활용 계획
계		40.63	8.781	25,059	
케이시	미반환	14.15	5.08	16,677	대기업생산용지, 외국대학 및 연구단지, 주거시설, 글로벌21평화기념공원
호비	일부반환	14.05	0.77	3,955	복합시니어레저타운 (주거, 골프장, 지원시설)
님블	2007. 4. 13.	0.07	0.051	853	군관사(156세대), 수변공원 경기일자리재단 업무시설 이전
모빌	일부반환	0.21	0.17	870	유통상업단지, 공원, 도로
캐슬	일부반환	0.21	0.29	1,433	동양대학교, 주거단지, 공원, 도로
짐볼스 훈련장	2005. 9. 30.	11.94	2.42	1,271	수목원, 테마마을, 산림복지타운

주: 총 사업비는 계획단계의 추정치이며,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
자료: 동두천시 제출자료

-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일부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일정이 미정인 상황이며, 현재 발전종합계획의 사업타당성 및 민자유치의 어려움,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 등 향후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나. 법률 유효기간 연장

- 개정안에 따라 법률의 유효기간이 9년 연장될 경우, 평택시지역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주한미군시설사업 등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음
- 평택시 지역개발사업(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포함)은 연차별 개발계획(제15조) 및 사업비의 지원(제19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제2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제29조),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제29조의2),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제32조),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제33조),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제34조) 등 사업 대다수가 현행법 제14조에 근거한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임
 - 평택시 지역개발사업은 전체 86개 사업에 18조 9,7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특별지원사업 15개,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2개, 일반사업 69개 등 총 86개의 사업이 추진 중임

[표 5] 평택시 지역개발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사업 건수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공공	민자
합 계		86	189,796	44,943	3,052	4,889	101,017	35,895
특별 지원	소 계	15	14,871	7,636	1,056	566	187	5,426
	행안부	11	7,012	5,658	828	339	187	
	문체부	2	7,256	1,528	151	151		5,426
	환경부	1	203	50	77	76		
	국토부	1	400	400				
특별회계	국방부	2	11,638	11,206				432
일반지원	11개 기관	69	163,287	26,101	1,996	4,323	100,830	30,037

자료: 평택시

- 주한미군시설사업은 크게 평택기지 이전사업,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

사업, 부지매각을 위한 환경정화사업, 부지매각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2025년 6월 기준 추진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6] 주한미군시설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구 분	건설사업		부지매각을 위한 환경정화사업	부지매각
	평택기지 이전사업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사업		
추진계획	72개 프로젝트	이전 위치, 규모, 범위 한미 협의 중	36개 기지	47개 기지
추진 현황	완료		22개 기지	20개 기지
	진행		7개 기지	20개 기지
진 도	98.6%		61.1%	42.6%
완료시기	2028년 완료 예정	완료시기 미확정	2029년 완료 예정	반환기지 40개 2031년 완료 예정

주: 미반환 7개 기지에 대한 환경정화 및 매각은 반환이 완료되면 적기 시행 예정

자료: 국방부

□ 다만, 현행법 부칙<제7271호, 2004.12.31.> 제3항 및 제4항¹⁾은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해 승인을 얻은 평택시개발사업, 국제 화계획지구개발사업, 외국교육기관 및 이에 대한 지원은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주한 미군시설사업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추진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현행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법률 효력이 종료될 경우, 동 법 제 8조의2 규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으로 칭함)의 존속 근거가 소멸하게 되나, 개정안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이 203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경우, 사업단의 존속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 경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 사업단의 존속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방부가 제출한 사업단 운영계획에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7271호, 2004.12.31> ①·② (생략)

③ (유효기간 만료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평택시개발사업, 국제 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외국교육기관 및 이에 대한 지원은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주한미군시설사업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근거하여,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산정함

- 인건비 단가는 2025년 예산 기준 단가에 최근 3년 평균 공무원임금상승률 2.4%를 적용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라 연장되는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5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존속기간 연장

- 2006년 7월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2026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 법의 유효기한이 2035년까지 연장되고, 평택기지 이전사업, 용산잔류 미군시설 이전사업, 부지매각을 위한 환경정화사업, 부지매각 등 계획된 사업의 추진 및 마무리를 위해 사업단이 존속할 경우 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 최근 4년간의 사업단 운영에 소요된 경비는 아래 표와 같음

[표 7]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소요경비 내역

구분			2022	2023	2024	2025
인건비 등	인건비 월단가(천원)	전문임기제	5,696	5,552	7,757	8,386
		기간제	2,769	3,204	3,704	4,286
	대상인원(명)	전문임기제	20	16	12	11
		기간제	9	9	8	7
	인건비 (백만원)	전문임기제	1,367	1,066	1,117	1,107
		기간제	299	346	356	360
		합계	1,666	1,412	1,473	1,467
	복리후생비(백만원)		1	3	2	4
	기관부담금(백만원)		145	147	128	124
	소계(백만원)		1,812	1,562	1,603	1,594
경상경비(백만원)		1,355	819	674	717	
합계(백만원)		3,167	2,381	2,277	2,311	

자료: 국방부

□ 국방부가 제출한 사업단의 계획에 따라, 추계기간 인건비를 산정

- 인건비는 2025년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 평균 공무원임금상승률 2.4%를 적용하여 산정함
- 기관부담요율은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 요율²⁾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국방부 계획을 반영함

[표 8]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인건비 등 추정: 2027~2035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인건비	인건비 월단가(천원)	전문임기제	8,793	9,004	9,221	9,442	9,668
		기간제	4,494	4,602	4,713	4,826	4,941
	대상인원(명)	전문임기제	9	9	9	9	9
		기간제	7	7	7	7	6
	인건비 (백만원)	전문임기제	950	972	996	1,020	1,044
		기간제	378	387	396	405	356
합계			1,327	1,359	1,392	1,425	1,400
복리후생비(백만원)			4	4	4	4	3
기관부담금(백만원)			174	179	185	191	189
인건비 등 합계(백만원)			1,505	1,542	1,580	1,619	1,592
구분			2032	2033	2034	2035	합계
인건비	인건비 월단가(천원)	전문임기제	9,900	10,138	10,381	10,631	87,179
		기간제	5,060	5,181	5,306	5,433	44,556
	대상인원(명)	전문임기제	9	9	9	9	81
		기간제	6	6	6	6	58
	인건비 (백만원)	전문임기제	1,069	1,095	1,121	1,148	9,415
		기간제	364	373	382	391	3,432
합계			1,434	1,468	1,503	1,539	12,847
복리후생비(백만원)			3	3	3	3	29
기관부담금(백만원)			194	199	204	209	1,724
인건비 등 합계(백만원)			1,631	1,670	1,710	1,751	14,6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경상경비는 국방부가 제출한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부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용역비를 포함하였음

2)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

	2027	2028	2029	2030
기관부담 요율(%)	13.130	13.194	13.286	13.380

[표 9]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경상경비 등 추정: 2027~203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기본경비	401	343	327	376	415
감정평가용역비	880	400	10	10	10
합계	1,281	743	337	386	425
구분	2032	2033	2034	2035	합계
기본경비	416	316	315	315	3,224
감정평가용역비	10	10	10	10	1,350
합계	426	326	325	325	4,57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을 2035년까지 9년 연장할 경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5년까지 191억 7,400만원(연평균 21억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
인건비 등	1,505	1,542	1,580	1,619	1,592	—
경상경비 등	1,281	743	337	386	425	—
합계	2,786	2,285	1,917	2,005	2,017	—
구분	2032	2033	2034	2035	합계	연평균
인건비 등	1,631	1,670	1,710	1,751	14,600	1,622
경상경비 등	426	326	325	325	4,574	508
합계	2,057	1,996	2,035	2,076	19,174	2,1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을 2035년까지 9년 연장할 경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5년까지 191억 7,400만원(연평균 21억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연장	2,786	2,285	1,917	2,005	2,017	—
구분	2032	2033	2034	2035	합계	연평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연장	2,057	1,996	2,035	2,076	19,174	2,1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연장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국방부가 제출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법 적용을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에서 제외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